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27
----------	---------

제출연월일	2005. 5.
제 출 자	거창군수

■ 개정이유

-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을 위한 과 단위 전담조직의 설치 및 한시기구의 폐지와 우리군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여유기구제 운영 등으로 인한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정원의 조정

- 공무원정원 : 644명 → 668명(신설업무로 인한 정원승인 24명)
 - 집행기관의 정원 : 630명 → 654명(증24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현행과 같음)

나. 정원관리기관별 두는 직급별 정원

-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 명시
《붙임 [별표1] 참조》

■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인력보강, 일제강제동원인력보강, 주택가격평가담당 인력보강, 재난관리기구신설, 백두대간보호업무, 공무원단체지원업무를 위한 인력 정원승인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2조중 “644명”을 “668명”으로, 동조제1호중 “630명”을 “654명”으로 한다.

제3조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와 같다.”로 하고, 동조에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동조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4명중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644명</u>으로 하되,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30명</u></p> <p>2.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668명</u>----- -----</p> <p>1. ----- : <u>654명</u></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p> <p>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u>규칙으로 정한다.</u></p>	<p>제3조(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p> <p>-----</p> <p>-----</p> <p>----- <u>별표와 같다.</u></p>	

[별표]

거창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3조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68	259	14	132	59	73	60	45	158	
정 무 직	1	1								
일반직	소계	521	212	9	75	20	55	38	40	147
	4급	1	1	0	0	0	0	0	0	0
	4~5급	2	1	0	1	0	1	0	0	0
	5급	31	11	3	2	1	1	3	1	11
	6급	140	61	3	10	5	5	10	12	44
	7급	161	79	2	26	9	15	11	12	33
	8급	125	47	1	32	4	30	9	10	24
	9급	61	12	0	4	1	3	5	5	35
별정직	소계	17	1	0	16	0	16	0	0	0
	6급	1	1	0	0		0	0		
	6~7급	16	0	0	16		16	0		
연구사	4	1	0	2	2		1			
지도직	소계	33	0	0	33	33	0	0	0	0
	지도관	3	0	0	3	3				
	지도사	30	0	0	30	30				
기능직	소계	92	44	5	6	4	2	21	5	11
	6급	3	1	0	1	0	1	1	0	0
	7급	9	4	0	2	1	1	3	0	0
	8급	14	2	2	0	0	0	3	1	6
	9급	28	18	1	1	1	0	6	1	1
	10급	38	19	2	2	2	0	8	3	4